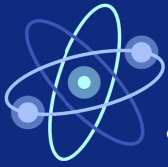
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

청년위원 모집안내



- **대상·자격** :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바이오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2명
 - ▶ 2026년도 기준 만 19세~34세 청년* (청년기본법 제3조)
 - *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별 청년연령 상한 1~3세 연장
 - ▶ 학계·연구기관·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(생명공학육성법 제7조)
- **모집기간** : 2026.9.1(화) 9시 - 2026.9.10(목) 18시
- **지원방법** : 청년인재DB 홈페이지*를 통해 온라인 신청
 - * 청년인재DB 홈페이지 : www.2030db.go.kr
 - ▶ 자세한 지원방법은 공고문 내 '모집 안내' 확인
- **활동내용** : 생명공학 기술개발·사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전략·계획 수립, 집행·조정 등 심의·의결 등
- **기타문의**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
 - * T. 044-202-4555



후보자 선정 등을 위해 별도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'26.4분기 중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.



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어떤 곳인가요?

1995년 출범한 생명공학 정책의 주요 방향 심의조정하는 범부처 심의기구로, 「시바이오 확산 전략(‘25.5)」, 「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(‘25.5)」, 「뇌 미래 산업 국가R&D 전략(‘26.3)」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
* (설치근거) 「생명공학육성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

2 심의회 위원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?



정책·계획 수립

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뇌연구, 합성생물학 등 주요 정책 방향 심의



기술개발·산업화 촉진

기술개발·산업화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투자 확대 계획 심의



제도·연구정책 심의

관련 제도 개선, 유망 기술 지정, 뇌연구·합성생물학 등 연구정책 심의

<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하는 일(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제2항) >

-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
-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
- 4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, 변경 및 지정 해제
- 5 「뇌연구 촉진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
- 6 「뇌연구 촉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
- 7 「합성생물학 육성법」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
- 8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되나요?



위원장

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



관계부처 차관

재경부, 과기정통부, 교육부, 농림부, 산업부, 복지부, 기후부, 해수부 등 8개 부처



민간전문가

학계·연구기관·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

(2년 / 연임 1회 가능)

총 17인 내외로 구성

4 활동기간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

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'26.4분기 중 위촉될 예정입니다.



심의회는 연평균 2회 이상(서면 포함) 개최됩니다.